# 이혼등·이혼등청구의소

[부산가법 2019. 1. 31. 2017드합201319, 201326]

## 【판시사항】

**교육 ( 교육 (** 난다는 등의 이유

대한민국 국적인 甲이 베트남 국적인 乙과 혼인하였는데, 甲은 乙이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, 乙도 甲이 乙 및 乙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부부싸움 후 별거하여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,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甲과 乙 모두에게 있고, 그 정도가 대등하다는 이유로 甲과 乙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

## 【판결요지】

대한민국 국적인 甲이 베트남 국적인 乙과 혼인하였는데, 甲은 乙이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, 乙도 甲이 乙 및 乙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부부싸움 후 별거하여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이다. 甲과 乙은 단기간의 만남 끝에 국제결혼을 하였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점에서 문화 차이와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, 혼인생활 중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, 서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심화시켰던 것으로 보이므로,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甲과 乙 모두에게 있고, 그 정도가 대등하다는 이유로 甲과 乙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이다.

### 【참조조문】

민법 제806조, 제840조 제6호, 제843조

# 【전문】

【원고(반소피고)】원고(반소피고) (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덕) 【피고(반소원고)】피고(반소원고) (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윤) 【사건본인】사건본인 1 외 1인

【변론종결】2018. 12. 20.

### 【주문】

#### 1

- 1.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,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는 이혼한다.
- 2.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.
- 3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재산분할로 10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4.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.

- 5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. 3. 10.부터 2029. 5. 15.까지는 월 600,000원 씩을, 그 다음 날부터 2031. 12. 11.까지는 월 300,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
- 6. 원고(반소피고)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들을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. 피고(반소원고)는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가. 일시: 매월 둘째, 넷째 토요일 10:00부터 19:00까지
- 나. 장소 및 방법: 원고(반소피고)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피고(반소원고)와 협의한 장소에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고, 원고(반소피고)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한 후 사건본인들을 다시 데려다 주는 방법
- 다.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는 사전에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정, 장소, 방법을 변경할 수 있고,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최대한 존중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한다.
- 7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- 8.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【청구취지】본소: 주문 제1항 및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위자료로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29. 5. 16.까지는 1,000,000원씩을, 2031. 12. 12.까지는 500,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 반소: 주문 제1, 4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7. 3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, 재산분할로 257,5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,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7. 3. 10.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 각 1인에 대하여 600,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

【청구취지】본소: 주문 제1항 및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위자료로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29. 5. 16.까지는 1,000,000원씩을, 2031. 12. 12.까지는 500,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 반소: 주문 제1, 4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7. 3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, 재산분할로 257,500,000원 및 이에 대한 0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,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7. 3. 10.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 각 1인에 대하여 600,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

## 【이유】

- 】본소, 반소를 함께 본다.
- 1. 인정 사실
- 가. 원고와 피고는 2009. 7. 24.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,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.
- 피고는 베트남 국적이었는데 2015. 11. 19.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.
- 나. 원고는 혼인생활 중 피고의 친정에 주택 신축비용으로 1,000만 원을 보내고 때때로 용돈이나 병원비를 보내는 등합계 3.0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송금해주었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다.

원고는, 자신이 바라는 만큼 피고가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잘 하지 못하고, 베트남에 있는 친정 가족들에게 장시간 국제전화를 하며, 핸드폰을 자주 바꾸는 등 과소비를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불만을 가졌다.

한편 피고는,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.

- 라. 원고와 피고는 2016. 6. 23.경부터 2주간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베트남에 있는 피고의 친정에 다녀왔다.
- 원고는 베트남에 다녀온 후 독감에 걸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, 피고는 2016. 7. 16. 원고에게 삶은 옥수수와 감자 잼을 해주었다.

원고가 위 식단에 불만을 표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.

- 원고는 위 과정에서 피고를 폭행하였고, 이로 인하여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정118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,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.
  - 그 후 원고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.
- 마. 피고는 2016. 7. 16. 위와 같이 부부싸움이 있은 후 피고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, 원고와의 분리를 요청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.

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.

- 바. 원고는 피고가 집을 나간 직후에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과 함께 집에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, 피고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.
- 원고는 2017. 5.경부터 2017. 6.경까지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, '은혜를 악마로 갚아라', '여자깡패', '사기꾼', '꽃뱀', '거지', '부친이…계속 돈 뜯어내라고 하든가?' 등 피고와 피고의 가족을 비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, 피고의 어머니와 언니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.
- [인정 근거] 갑 제1 내지 8호증, 을 제1, 2, 3, 8 내지 10호증(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 , 가사조사관 보고서, 변론 전체의 취지
- 2.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
- 가.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: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각 이유 있음
  - 나.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: 각 이유 없음

[판단 근거]

-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: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, 2016. 7. 17.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,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
  -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, 그 정도가 대등함:
  - 피고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았고, 가사 및 육아방식과 관련하여 원고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,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.
- 한편 원고가 2016. 7. 16. 피고를 폭행하였던 것은 사실이나, 원고와 피고는 위 폭행이 있기 직전에 베트남에 있는 피고의 친정을 함께 방문하는 등 비교적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위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피해의 정도, 별거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위 폭행이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또한 원고가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 이후로 보이고, 그 이전에도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.

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단기간의 만남 끝에 국제결혼을 하였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점에서 문화 차이와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, 혼인생활 중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, 서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심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.

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, 그 정도는 대등하다.

3.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

1) 원고는 2008. 6. 5. 아버지 소외인이 사망함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(주소 생략) 아파트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다.

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.

2) 원고는 혼인 당시 이동통신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그만두었다.

피고는 혼인생활 중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였다.

[인정 근거] 앞서 든 증거들,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가사조사관 보고서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

- 1) 분할대상 재산: 별지 '분할대상재산명세표' 기재와 같다.
- 2)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
- 가) 원고의 순재산: 515,000,000원
- 나) 피고의 순재산: 0원
- 다) 원·피고의 순재산 합계: 515,000,000원

다.

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

1) 재산분할의 비율: 원고 80%, 피고 20%

[판단 근거]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,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, 원고와 피고의 소득,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.

- 2) 재산분할의 방법: 당사자들의 의사,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, 취득 및 유지 경위,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.
- 3)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: 103,000,000원

[계산식]

순재산 합계 515,000,000원 × 피고의 몫 20% = 103,000,000원

라. 소결론

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4. 친권자·양육자 지정, 양육비, 면접교섭(직권)에 관한 판단

가.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

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, 사건본인들과의 친밀도, 사건본인들의 나이,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,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,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.

나. 양육비

1) 양육비 지급 의무의 발생

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피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,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 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- 2)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장래양육비의 액수
-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. 3. 10.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0,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.

[산정 근거]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 상황, 원고와 피고의 연령, 직업 및 소득, 재산 및 생활능력,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참작

다.

면접교섭(직권)

원고는 비양육친으로서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므로, 사건본인들의 나이, 양육 상황,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 섭 일시, 장소 등을 정한다.

#### 5. 결론

그렇다면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, 재산분할,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,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[[별 지] 분할대상재산명세표: 생략]

판사 김종민(재판장) 지현경 이민령